

\* 반드시 공모 신청 매뉴얼을 확인 · 숙지하신 후 작성바랍니다.

『2025년 지역전시 활성화 사업』  
유형3. 미술컨텐츠-지역 전시공간 매칭 지원  
공모 신청 매뉴얼  
**[전시공간]**

1. 지원 필수조건 및 예시
2. 매칭 조건
3. 신청서 작성 안내
4. 예산기준표

# I. 지원 필수조건 및 예시

<전시공간 운영단체 필수 조건> \* ①~⑥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

- ① 서울 외 지역에 전시공간을 보유한 영리·비영리 단체(기업)
  - 최소 50평(약 165㎡) ~ 최대 100평(약 350㎡) 이상
  - 단, 문예회관은 금액 무관 최소 50평 이상
- ② 사업자등록증 혹은 고유번호증 보유
- ③ e나라도움 운용 및 가능(교부신청, 지출·정산, 회계검증)
- ④ 현금성 자부담 10% 편성 및 정산 가능
- ⑤ 자체 보유한 전시공간
- ⑥ 설치·철수·휴관일 제외 30일 이상 전시 운영

<전시공간 면적 조건>

- ① 미술콘텐츠비 기준 전시공간 면적 조건
  - 미술 콘텐츠비 기준 4,800만원 이하일 경우 실내 전시면적은 50평(약 165㎡) 이상이어야 함
  - 미술 콘텐츠비 기준 4,8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실내 전시면적은 100평(약 350㎡) 이상이어야 함

※ 단, 문예회관은 금액 무관 최소 50평 이상만 충족하면 가능

| 미술콘텐츠비<br>(콘텐츠 제공자 용역비) | 기준①<br>3,000만원 이상 ~ 4,800만원 이하 | 기준②<br>4,800만원 초과 ~ 5,000만원 이하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전시공간 기준 면적              | 50평(약 165㎡) 이상                 | 50평 초과(약 165㎡) ~<br>100평(약 350㎡) 미만 |

예시

| 연번 | 미술콘텐츠비<br>(콘텐츠 제공자 용역비) |         | 지원자격<br>전시면적 | 전시공간   | 전시공간 면적 | 여부  | 비고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|-----------|
| 1  | 콘텐츠 1                   | 3,500만원 | 50평 이상       | ○○미술관  | 60평     | 가능  |           |
|    | 콘텐츠 2                   | 4,000만원 | 50평 이상       |        |         |     |           |
| 2  | 콘텐츠 1                   | 5,000만원 | 100평 이상      | ○○문예회관 | 110평    | 가능  |           |
|    | 콘텐츠 2                   | 3,000만원 | 50평 이상       |        |         |     |           |
| 3  | 콘텐츠 1                   | 5,000만원 | 100평 이상      | ○○미술관  | 70평     | 불가능 | 최소 평수 미충족 |
|    | 콘텐츠 2                   | 3,000만원 | 50평 이상       |        |         | 가능  |           |
| 4  | 콘텐츠 1                   | 4,900만원 | 100평 이상      | ○○미술관  | 50평     | 불가능 | 최소 평수 미충족 |
| 5  | 콘텐츠 1                   | 4,900만원 | 100평 이상      | ○○문예회관 | 50평     | 가능  |           |

## <전시공간 예산 편성 조건>

- ① 국고보조금은 최소 5천 ~ 최대 1억원 내 자유 선택
- ② 미술콘텐츠비는 최소 3천 ~ 최대 5천만 원까지 지급 가능
- ③ 미술콘텐츠 2개 매칭 시, 2개의 콘텐츠비는 총 국고보조금의 80%를 초과할 수 없으며, 국고보조금 선택은 최대 1억 원까지만 가능
- ④ 총 국고보조금의 10%를 현금성 자부담으로 편성 및 지출·정산

| 매칭 희망 미술콘텐츠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개                      | 2개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미술콘텐츠비 편성 범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,000만원 이상 ~ 5,000만원 이하 | 6,000만원 이상 ~ 1억원 이하      |
| 국고보조금 신청가능 금액<br><b>*최소 5천~최대 1억 기준 준수</b> | 5,000만원 이상 ~ 6,250만원 이하 | 7,500만원 이상 ~ 1억원 이하      |
| 필수 자부담<br><b>*국고보조금의 10%</b>               | 500만원 이상 ~ 625만원 이상     | 750만원 이상 ~ 1,000만원 이하    |
| 총 사업비<br><b>*(국고보조금+자부담)</b>               | 5,500만원 이상 ~ 6,875만원 이상 | 8,250만원 이상 ~ 11,000만원 이상 |

## 예시

| 구분                    | 목           | 세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세부              | 가능      | 가능      | 가능      | 불가능            | 불가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국<br>고<br>보<br>조<br>금 | 운<br>영<br>비 | 미술<br>콘텐츠비<br>국고보조금의<br>최대 80% | 콘텐츠 A           | 4,000만원 | 5,000만원 | 3,000만원 | 5,000만원        | 5,000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콘텐츠 B           | 4,000만원 | 3,000만원 | 3,000만원 | 4,000만원        | 5,000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합계(A+B)         | 8,000만원 | 8,000만원 | 6,000만원 | 9,000만원        | 1억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그 외<br>(C)                     | 일반용역비,<br>기타인건비 | 2,000만원 | 2,000만원 | 2,500만원 | 1,000만원        | 2,500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국고보조금 합계(A+B+C)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1억원     | 1억원     | 8,500만원 | 1억원            | 1.25억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자<br>부<br>담           |             | 자부담(D)<br>국고보조금의 10%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1,000만원 | 1,000만원 | 850만원   | 1,000만원        | 1,250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총 사업비(A+B+C+D)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1.1억원   | 1.1억원   | 9,350만원 | 1.1억원          | 1.375억원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가능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가능      | 가능      | 가능      | 콘텐츠비<br>80% 초과 | 콘텐츠비<br>80% 초과<br>최대 신청금<br>액 초과 |

## II. 매칭 조건

### <지역>

- 같은 지역(시/군) 내 전시공간-미술콘텐츠 제공자는 매칭 불가
- 매칭하려는 미술콘텐츠가 기존에 전시한 공간에서 재개최는 불가

| 전시공간        | 미술콘텐츠 제공자                    | 매칭 가능 여부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
| ○○문화회관(포항시) | 미술콘텐츠 제공자(포항시)               | 불가능      |
| 예경미술관       | 콘텐츠(* 예경미술관에서 콘텐츠의 개최 이력 존재) | 불가능      |

### <콘텐츠>

- 전시공간은 최대 2개 미술콘텐츠와 매칭 가능
- 미술콘텐츠 제공자는 최대 2개의 콘텐츠까지 매칭 가능

#### 전시공간 예시

| 예시 | 전시공간  | 콘텐츠 제공자 | 콘텐츠         | 가능                    | 불가능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1  | ○○미술관 | A       | ▲<br>●      | ▲, ● 모두 매칭 가능         | 없음                   |
| 2  | ○○미술관 | A       | ▲<br>●<br>■ | ▲, ●, ■ 중<br>2개 매칭 가능 | ▲, ●, ■<br>3개 매칭 불가능 |
| 3  | ○○미술관 | A       | ■           | ■ 1회 개최 가능            | ■ 2회 개최 불가능          |
| 4  | ○○미술관 | A       | ▲           | ▲ 매칭 가능               | 없음                   |

#### 미술콘텐츠 제공자 예시

| 예시 | 콘텐츠 제공자<br>등록콘텐츠 수 | 전시공간                        | 매칭 가능 여부 |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 | 1개                 | 공간 1개                       | 가능       | 콘텐츠비<br>(매칭된 모든<br>콘텐츠비의 합)<br>는 총 국고보조금의<br>80% 초과 불가 |
|    |                    | 공간 2개                       | 가능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|                    | 공간 3개 이상                    | 불가능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  | 2개                 | 공간 1개                       | 가능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|                    | 공간 2개                       | 가능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|                    | 공간 3개 이상                    | 불가능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|                    | 공간 1개와 콘텐츠 2개 매칭            | 가능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|                    | 공간 1, 공간 2와<br>콘텐츠 각 2개씩 매칭 | 불가능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3  | 3개                 | 공간 1개                       | 가능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|                    | 공간 2개                       | 가능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|                    | 공간 3개 이상                    | 불가능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|                    | 공간 1개와 콘텐츠 2개 매칭            | 가능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|                    | 공간 1개와 콘텐츠 3개 매칭            | 불가능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|                    | 공간 1, 공간 2와<br>콘텐츠 각 2개씩 매칭 | 불가능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# <콘텐츠 조정>

- 미술콘텐츠는 콘텐츠 공모 당시 등록 신청서를 기반으로 운영하여야 하며, 코어콘텐츠는 변경 불가
- 제시된 미술콘텐츠비는 최대 상한액으로 매칭 시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
- 미술콘텐츠의 내용, 규모, 금액 등 조정이 필요할 경우, 전시공간과 미술콘텐츠 제공자는 사전협의 후, 조정 가능 여부를 예술경영지원센터에 확인한 후 매칭을 결정(코어콘텐츠는 변경 불가)
- 미술콘텐츠의 내용, 규모, 금액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예술경영지원센터 승인 필수(※승인 불가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)

### <기타 사항>

- 공모기간 동안 미술콘텐츠 제공자와 전시공간 간 사전 매칭 협의 권장
- 전시공간-미술콘텐츠 제공자는 중복 지원 불가, 한 가지 역할만 가능
- 최종 매칭금액이 지원규모를 초과할 경우 전시공간은 1개의 콘텐츠를 우선 매칭하며, 예술경영지원센터의 공모조건에 따라 선발
- 필수지원 조건을 충족한 전시공간과 미술콘텐츠 제공자 매칭

### Ⅲ. 신청서 작성 안내

#### ① 매칭 신청서

##### □ 작성 양식

- (양식) 신청서식은 임의로 변형 불가하며, 일부 항목에 대해 양식표 추가 가능
- (작성) 본문은 휴먼고딕 10pt, 행간 160%
- (날인) 직인 필수(서명 불가)
- (제출) 반드시 한글 파일(HWP)로 작성 및 제출, PDF 제출 불가
- (파일명) 지원유형에 따라 선택 작성
  - 전시공간 [제공자\\_매칭신청서\\_신청주체명](#)

##### □ 세부 작성 방법

- (매칭 희망 미술콘텐츠)
  - 매칭을 희망하는 콘텐츠 수와 정보 기재(1개 희망 시, ② 공란 처리)
  - 콘텐츠비 및 전시기간은 협의된 내용 기재
- (전시공간 기본정보)
  - 전시공간 기본 정보 기재, 공란이 없도록 모두 기재
  - 전시면적은 전시 진행 공간 면적 기재, 공간 유형은 ①·②·③ 항목 모두 체크
- (보조사업 신청정보)
  - 전시공간을 운영하는 주체 정보 기재, 공란이 없도록 모두 기재
  - 유형은 ①·②·③ 항목 모두 체크
- (전시공간 정보)
  - 전시기설 현황, 층별 현황, 전시공간 현황, 안전관리 계획 정보 기재, 공란이 없도록 모두 기재
  - 전시공간 현황은 전시가 개최될 공간의 정보를 기재
  - 전시기설 전경 사진은 외부, 도면 사진은 평면도, 내부 사진은 전시장 내부 사진을 첨부

○ (매칭 희망 미술콘텐츠 정보)

- 등록 시 미술콘텐츠를 기준으로 작성하되, 변경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항목을 모두 체크
- 매칭 희망 미술콘텐츠 정보는 미술콘텐츠 제공자와 협의하여 작성
- 미술콘텐츠 제공자와 협의한 전시기간, 면적, 기타요건에 대해 기재
- 참여작가 및 작품 수 모두 기재, 참여작가 명단은 일체 기재, 주요 작품은 전체 작품 수 대비 60% 이상 기재

○ (목표수립)

- 미술콘텐츠 개최 시 달성할 계량·비계량 목표 기재
- 관람객 수 및 기대수익의 경우 미술콘텐츠 진행 시 목표치 기재(2개일 경우 통합하여 작성)

○ (홍보계획)

- 미술콘텐츠 개최 시 홍보계획 작성(2개일 경우 통합하여 작성)
- 현수막, 가로등 배너, 포스터, 리플렛, 광고, 보도자료 등 전시 홍보시 활용할 온·온프라인 매체 일체 기재

○ (추진일정)

- 미술콘텐츠 개최 시 추진 일정 작성(2개일 경우 통합하여 작성)
- 설정된 사업 기간을 준수하여 작성(2025년 8월 ~ 2026년 2월)

## 2. 자원 조성 및 예산계획

### □ 용어

- 사업비 : 국고보조금(예술경영지원센터)과 자부담금(신청주체)의 합산액
- 국고보조금 : 문체부가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를 공모사업에 재교부하는 금액
- 자부담금 : 신청주체가 부담하여 e나라도움에 등록/사용하는 금액
- 순수 자부담금 : 사업비 외 사업에 운용되는 기타 부담액(부가가치세 등)
- 미술콘텐츠비 : 전시기획·설치·철수 등에 소요되는 직접경비로, 추후 용역비의 형태로 미술콘텐츠 제공자에 지급하는 금액

## □ 세부 작성 방법

### ○ (재원조성 계획)

- 자부담 조달계획 및 확정 여부에 대해 상세히 기재
- 전시장지킴이 사례비, 홍보비는 통합하여 작성
- 미술콘텐츠비는 1, 2로 나누어 기재, 단순 1식 처리 지양
- 미술콘텐츠비는 콘텐츠제공자와 논의하여 작성하며 편성한 항목 내역에 따라 상세히 작성
- 미술콘텐츠비는 총 국고보조금의 80%를 초과할 수 없음

## ③ 작성 유의사항

- 작성내용은 공공의 목적으로 공개될 수 있음
- 사업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주체에게 있음
- e나라도움에 제출된 서류는 공고 종료 후 수정 및 반환 불가함
- 수치 작성 시 이상이하 등의 추정치 작성 불가 예) 오천명(X), 오천명 이상(X), 5,000명(O)
- 행정규정에 따라 아래의 경우 심의 제외될 수 있음
  - 필수서류 누락, 지원조건 불충족, 날인 누락, 신청서 미작성, 내용 미흡 등
- 신청주체는 사업 신청·운영 간 사업체 유지 필수, 휴·폐업 시 지원이 취소됨
- 추후 지원 심의에서 보조금 배정 기준에 따라 지원액이 조정될 수 있음
- 신청내용이 실현 불가능하거나, 실제 운영과 상이할 경우(허위) 사업 축소 및 취소될 수 있음
- 신청내용은 저작권·특허권·디자인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초상권·성명권 등의 권리를 포함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 일체의 민·형사상 법적인 문제가 없어야 하며, 문제 발생 시 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음
- 사업비는 사업기간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, 사전·사후 사용은 불인정함
- 예산서는 선택한 지원구간에 꼭 맞춰 작성하며, 초과나 미달 작성 불가함
- 자부담금은 정률 책정하며, 추후 감액 집행할 경우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음
- 신청주체가 일반과세일 경우 부가세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순수 자부담금으로 부담하여야 하며, 사업비 편성은 반드시 공급가액으로 작성

- 예산편성은 반드시 명확한 산출 근거가 있어야 하며, 명확하지 않거나 과도한 편성은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음
-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5조(보조사업 관련 계약)에 따라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준용하여야 함
  -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최소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가격경쟁성을 확인한 후 계약하여야 하며, 추정가격이 2천만원이 초과될 경우 조달청장, 지방자치단체장,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함
  - 단,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\*에 따라 계약체결 시 5천만원 이하로 수의계약이 가능함
    - \*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
    - \*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
    - \*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,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,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중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
- 전시공간 제공자는 미술콘텐츠 제공자와 콘텐츠비만 거래할 수 있으며, 그 외 기타 인적·물적 거래를 할 수 없음
- 심의를 통해 선정된 미술콘텐츠에 한해 전시공간 제공자와 매칭 가능하며, 콘텐츠비는 전시공간 제공자가 용역비의 형태로 미술콘텐츠 제공자에게 지급함
- 콘텐츠비 지급에는 국가계약법 및 동법 시행령을 준수하며,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지급 가능함
- 콘텐츠비 지급은 선금-잔금의 형태로 2회 분할 지급함

## IV. 예산 기준표(전시공간 제공자)

| 목            | 세목                | 지급유형 및 단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인건비<br>(110) | 기타<br>인건비<br>(05) | ● 전시장지킴이 사례비<br>- 근무시간에 따라 주휴수당 등 지급 고려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- 내부인력 활용 시 비용처리 불가,<br>외부인력 고용 시에만 지급 가능<br>- 근무시간, 요일 상관 없이 3개월<br>연속 동일인 사용 불가<br>- 산출액은 원천세, 사회보험 등 포함<br>- 비용 산정은 근로기준법 준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시급 (1시간)<br>10,030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일급 (8시간)<br>80,240원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운영비<br>(210) | 일반<br>용역비<br>(14) | ● 미술콘텐츠 제공자 용역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- 총 국고보조금의 80% 이내<br>- 등록 미술콘텐츠는 공고문 링크<br>참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미술콘텐츠당 규모<br>3천만 원 ~ 5천만 원 이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● 일반용역비<br>- 전시 홍보, 광고 등에 필요한 대행용역비<br>- 기타 전시 유지관리에 필요한 대행용역비(협의) |                     | - 미술콘텐츠 제공자와 콘텐츠비 외<br>인적·물적 거래 불가<br>- 기타대행용역비는 예술경영지원센<br>터와 협의 필요<br>- 콘텐츠비 내 상세내역과 일반용역<br>비 산출내역 중복 불가 ※전시공간<br>연출 일체비용, 작품운송, 보험, 작<br>가비 등은 콘텐츠비로만 편성 가능<br>(전시공간의 용역비로 편성 불가) |

| <사용제한 업종>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유형        | 룸살롱, 카바레, 단란주점, 노래방, 맥주홀, 나이트클럽, 스탠드바, 유흥주점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자율지정 제한   | 산후조리원, 양품점, 회원제, 표구사, 불링장, 인형 및 완구점, 수제용품점, 혼수전문점, 상담실, 레포츠(스포츠)클럽, 종교상품점, 악기, 종교단체, 아동복, 운동경기, 레저용품, 총포류, 골동품, 예술품, 방문판매, 악세사리, 음식점, 장의사, 장례식장, 운동경기관람, 피아노, 피부미용, 스포츠마사지, 학교등록금, 무속, 철학관, 복권, 기성복, 학습지, 다단계, 수영장, 결혼서비스, 이벤트, 묘지, 화방, PC게임방, 자석요, 체형관리, 유치원, 메리야쓰 등 |
| 기타        | 성인용품판매점, 안마시술소, 이·미용실, 헬스, 사우나, 골프장, 당구장, 비디오방, 전화방, 카지노, 전자오락실, 게임방, 복권방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